

11월 6일 (Fri) 10시 발표

부산시 코로나19 현황

총 확진자 (누계)	추가확진자 (오늘)	완치	현재 치료중	사망
593명	0명	543명	37명	13명

※ 부산시와 질병관리청이 발표하는 확진자 수가 다른 이유는 집계방식과 발표기준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집계방식) 질병관리청은 최초 검사 기관 기준으로 확진자를 집계, 부산시는 부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확진자를 기준으로 집계
 - (발표기준시점) 질병관리청은 당일 0시 (전일 24시) 기준으로 발표, 부산시는 당일 기준 수시 발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등), 유흥시설 5종 시설 면적 4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월,수,금 13시 30분 온라인 브리핑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 확진자 이동경로
- 코로나19 발생현황
- 코로나19 지원정책
- 인터넷 방역단 / 클린존
- 의료지원 / 심리상담
- 시민 행동수칙
- 공지사항
- 코로나19 Q & A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10.12. ~ 11.6. 까지)

부산광역시 거리두기 1단계 (2020.10.12.~ 11.6. 까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안녕한 부산을 만들어 갑시다



구 분		거 리 두 기 1 단 계 (10.12. ~ 11.6. 까지)		
전국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모임·행사) 허용 *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 5종은 시설 면적의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스포츠 행사) 관중 수 제한(최대 30%) ◎ (국공립시설) 운영 가능, 인원 제한(최대 50%),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고궁, 공원, 경마·경륜·경정 등 ◎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운영 가능 * 이용자 밀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설별 방역 계획 수립하여 운영 ◎ (기업, 기관)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공공),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민간) 		
고위험시설	집합 제한 (핵심방역 수칙준수의 무)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③ 단란주점 ⑤ 헌팅포차 ⑦ 뷔페 ⑨ 실내 스탠딩공연장 ⑪ 유통물류센터 </td>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콜라텍 ④ 감성주점 ⑥ 대형학원(300인 이상) ⑧ 노래연습장 ⑩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⑫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td> </tr> </table> <p>※ ① ~ ⑤ 4㎡ 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 ⑫ 8㎡ 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③ 단란주점 ⑤ 헌팅포차 ⑦ 뷔페 ⑨ 실내 스탠딩공연장 ⑪ 유통물류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콜라텍 ④ 감성주점 ⑥ 대형학원(300인 이상) ⑧ 노래연습장 ⑩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⑫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③ 단란주점 ⑤ 헌팅포차 ⑦ 뷔페 ⑨ 실내 스탠딩공연장 ⑪ 유통물류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콜라텍 ④ 감성주점 ⑥ 대형학원(300인 이상) ⑧ 노래연습장 ⑩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⑫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다중이용시설	집합 제한 (필수방역 수칙준수)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과자점 ③ 놀이공원 ⑤ 영화관 ⑦ 학원(300인 미만) ⑨ 스터디카페 ⑪ 종교시설 ⑬ 목욕탕/사우나 ⑮ 멀티방/DVD방 </td>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워터파크 ④ 공연장 ⑥ PC방 ⑧ 직업훈련기관 ⑩ 오락실, 만화카페 ⑫ 실내결혼식장 ⑭ 실내체육시설 ⑯ 장례식장 </td> </tr> </table> <p>※ (필수방역수칙)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거리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과자점 ③ 놀이공원 ⑤ 영화관 ⑦ 학원(300인 미만) ⑨ 스터디카페 ⑪ 종교시설 ⑬ 목욕탕/사우나 ⑮ 멀티방/DVD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워터파크 ④ 공연장 ⑥ PC방 ⑧ 직업훈련기관 ⑩ 오락실, 만화카페 ⑫ 실내결혼식장 ⑭ 실내체육시설 ⑯ 장례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과자점 ③ 놀이공원 ⑤ 영화관 ⑦ 학원(300인 미만) ⑨ 스터디카페 ⑪ 종교시설 ⑬ 목욕탕/사우나 ⑮ 멀티방/DVD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워터파크 ④ 공연장 ⑥ PC방 ⑧ 직업훈련기관 ⑩ 오락실, 만화카페 ⑫ 실내결혼식장 ⑭ 실내체육시설 ⑯ 장례식장 			

구분	거리 두기 1 단계 (10.12. ~ 11.6. 까지)
행정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출입자 전자출입명부(QR코드) 도입(해운항만과-6207) : 8.19. ~ 별도 해제 시까지 ◎ 마스크 착용 의무화(공고2020-319, 재난대응과) : 8.22. ~ 별도 해제 시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도 높은 다중이용시설, 버스·지하철, 집회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11.13.~) ◎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건강정책과-25023) : 8.25. ~ 별도 해제 시까지 ◎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공고2020-321, 버스운영과) : 8.25. ~ 별도 해제 시까지 ◎ 미등록 불법사업자 다단계 사업설명회, 불특정다수 대상 투자설명회 집합금지(공고2020-339, 소상공인지원담당관) : 9. 4. ~ 별도 해제 시까지

핵심방역수칙 (공통)

사업주 · 종사자	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사업주 마스크 착용, 종사들에 마스크 착용 안내 ◎ 1일 1회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 작성) ◎ 방역자 지정 ◎ 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 작성)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인증 ▪ 수기명부 작성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 확인 협조,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

1 공통사항

(필수방역수칙) 시설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작성, 이용자간 거리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 의무화
(집합·모임·행사) 허용 (스포츠 행사) 관중 수 제한(최대 30%)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가능, 인원제한(50%)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운영
(기업, 기관) 공공·유연·재택근무 등으로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민간·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2 위험시설 (집합금지⇒필수방역수칙준수의무화) 다중이용시설(필수방역수칙준수의무화)

1.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2. 콜라텍
3. 단란주점
4. 감성주점
5. 헌팅포차
6. 목욕탕·사우나
7. 학원, 스터디카페
8. 뷔페
9. 노래연습장
10.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11. 실내 스탠딩공연장
12. 유통물류센터
13.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14. PC방, 멀티방, DVD방, 오락실, 만화카페
15. 종교시설
16. 공연장, 영화관
17. 워터파크, 놀이공원
18. 직업훈련기관
19. 예식장
20. 장례식장
21.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부산시 행정명령>

- 선박 출입자 전자출입명부(QR코드) 도입(해운항만과-6207) : 8.19.~별도 해제시까지
- 마스크 착용 의무화(공고2020-319, 재난대응과) : 8.22.~별도 해제시까지
-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건강정책과-25023) : 8.25.~별도 해제시까지
-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공고2020-321, 버스운영과) : 8.25.~별도 해제시까지
- 미등록 불법사업자 다단계 사업설명회, 불특정다수 대상 투자설명회 집합금지(공고2020-339, 소상공인지원담당관) : 9. 4.~별도 해제시까지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공통)



사업주·종사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금지
-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 1일 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 방역관리자 지정
- ⊕ 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작성)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 시설 내 이용자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 ⊕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이용자 수칙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